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8,656,907	10,159,707
일반회계	322,265,864	9,667,976
특별회계	16,391,043	491,731
기타특별회계	16,391,043	491,731
상수도특별회계	6,109,567	183,287
자활기금특별회계	859,894	25,7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8,893	24,867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104,518	123,13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4,140	4,624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70,770	5,12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63,261	124,89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31,84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9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